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06. 04. 14. 규정 제1호	개정	2017. 09. 05. 규정 제140호
개정	2006. 12. 19. 규정 제19호	개정	2018. 12. 06. 규정 제169호
개정	2008. 03. 18. 규정 제23호	개정	2019. 03. 29. 규정 제176호
전문개정	2009. 07. 13. 규정 제38호	개정	2019. 03. 29. 규정 제176호
개정	2010. 04. 05. 규정 제58호	개정	2019. 12. 26. 규정 제198호
개정	2011. 12. 30. 규정 제67호	개정	2021. 06. 15. 규정 제221호
개정	2012. 03. 12. 규정 제74호	개정	2023. 04. 04. 규정 제250호
개정	2012. 11. 06. 규정 제82호	개정	2023. 12. 05. 규정 제253호
개정	2013. 03. 14. 규정 제89호	개정	2024. 09. 25. 규정 제264호
개정	2015. 01. 09. 규정 제110호	개정	2025. 06. 25. 규정 제274호
개정	2015. 09. 25. 규정 제114호	개정	2026. 03. 16. 규정 제2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23조에 따라,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원장)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별도의 감사팀과 3실 9팀을 두며(전략경영실, 만화영상산업실, 만화콘텐츠실, 전략기획팀, 인사총무팀, 회계팀, 만화산업팀, 융복합사업팀, 만화진흥팀, 만화박물관팀, 아카이브사업팀, 축제사업팀) 진흥원의 조직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2. 11. 06., 2015. 09. 25., 2019. 12. 26., 2023. 12. 05., 2026. 03. 16.>

② 진흥원에는 국제만화가대회(이하 “ICC“라 한다) 사무국을 별도 조직으로 두며, ICC 사무국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③ 원장은 만화진흥과 한국만화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박물관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04. 05., 2011. 12. 30.> <개정 2025. 06. 25.>

④ 원장은 진흥원의 정책자문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04. 05.>

⑤ <신설 2011. 12. 30.> <삭제 2019. 12. 26.>

⑥ ①에 따른 감사팀은 진흥원의 환경경영(ESG) 대응 및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하며 감사팀 부서장은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둔다. <신설 2023. 12. 05.>

제5조(정원 및 직급) ① 진흥원의 정원 및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06. 15.>

②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계약직 및 파견직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06. 15.]

③ ‘만화영상산업실장’은 개방형 직위(1급)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할 수 있고 임기는 2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공고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신설 2023. 12. 05.> <개정 2024. 09. 25.>

제6조(직원의 구분) 진흥원의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직 :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고 진흥원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 <개정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계약직 : 진흥원 운영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 <개정 2011. 12. 30., 2017. 09. 05., 2018. 12. 06.>
4. 공무원 :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고 진흥원의 고유사무를 보조하는 직원과 시설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직원 <신설 2018. 12. 06.>

제7조(사무분장) ① 진흥원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직제별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직제별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분장의 조정) ① 진흥원의 각 조직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사무분장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서별 사무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장이 정한다.
2. 부서내 사무의 분장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진흥원은 사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장은 각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한 위임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원장의 유고시에는 실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제 순서를 따른다.

② 실장의 유고시에는 해당 실의 팀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팀장의 유고시에는 해당 팀의 상위 직급 매니저가 그 직무를 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06. 15., 2024. 09. 25.]

제11조(업무협조)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사무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있어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지휘·감독) ①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업무를 조정·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29.>

②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1차 근무평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부서장 및 직원 구분) ① 부서장의 직책은 실장·팀장으로 구분하고 1급~6급 직원 중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원장이 부여하며, 부서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06., 2012. 03. 12., 2015. 01. 09., 2019. 03. 29., 2021. 06. 15.>

②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리직, 일반행정직, 전문직, 공무직으로 구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6.>

[전문개정 2011. 12. 30.]

[제목개정 2018. 12. 06., 2019. 03. 29.]

부 칙 (2006. 04. 14.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규정 제19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18. 규정 제23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정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4. 05. 규정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규정 제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6. 규정 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14. 규정 제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09. 규정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중 “별표 1” 은 이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부 칙 (2015. 09. 25. 규정 제1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9. 05. 규정 제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06. 규정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의 적용례) 공무직의 직위부여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9. 규정 제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6. 규정 제1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15. 규정 제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04. 규정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05. 규정 제2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9. 25. 규정 제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6. 25. 규정 제2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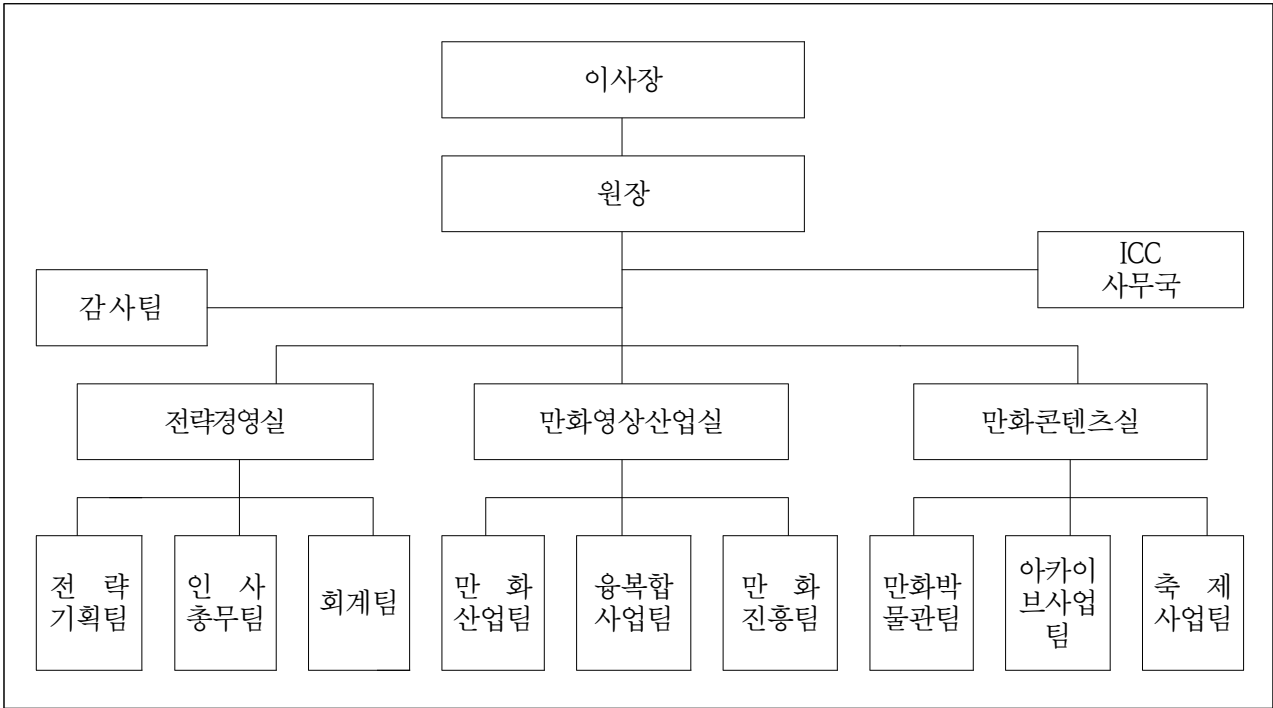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6. 규정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12. 30., 2012. 11. 06., 2015. 01. 09., 2015. 09. 25., 2019. 03. 29., 2019. 12. 26., 2023. 12. 05., 2024. 09. 25., 2026. 03. 16.>

조 직 표



※ 직제순 : 조직표에 따름

(별표 2) <개정 2011. 12. 30., 2012. 03. 12., 2012. 11. 06., 2018. 12. 06., 2023. 04. 04., 2023. 12. 05.>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일 반 직						공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65	1	3	5	6	12	26	12	

(별표 3) <신설 2012. 03. 12.>, <개정 2015. 09. 25.> <삭제 2018. 12. 06.>